

「구미캠핑장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」에 대한 수정안

의안 번호	
----------	--

제출일자 2025. . .
제출자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

1. 수정이유

- 다자녀 가정, 장애인, 국가보훈대상자 등의 대상에도 좀 더 많은 혜택을 주기 위해 감면 시설 확대

2. 수정 주요내용

- 별표2(구미시 낙동강 캠핑장 시설 사용료 감면율)의 표의 내용 중
비고란 수정: ‘카라반’ 추가

• 당 초:

감면대상 \ 대상기간	성수기	비수기		비고
		주중	주말	
1. 구미시민	20%	20%	20%	카라반, 일반·오토 캠핑장, 평상의 사용료에 한함
2. 구미시민 다자녀 가정 (1가정 1실에 한함)	—	50%	20%	일반·오토 캠핑장, 평상의 사용료에 한함
3. 장애인	—	50%		
4. 국가보훈대상자	—	50%		
5. 병역명문가 예우대상 자	—	50%		
6. 기타	—	50%		

• 변 경:

감면대상	대상기간	성수기	비수기		비고
			주중	주말	
1. 구미시민		20%	20%	20%	카라반, 일반·오토 캠핑장, 평상의 사용료에 한함
2. 구미시민 다자녀 가정 (1가정 1실에 한함)		-	50%	20%	
3. 장애인		-	50%		
4. 국가보훈대상자		-	50%		
5. 병역명문가 예우대상 자		-	50%		
6. 기타		-	50%		

「구미캠핑장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」에 대한 수정안

구미캠핑장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
수정한다.

별표 2 중 비고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감면대상 \ 대상기간	성수기	비수기		비고
		주중	주말	
1. 구미시민	20%	20%	20%	카라반, 일반·오토 캠핑장, 평상의 사용료에 한함
2. 구미시민 다자녀 가정 (1가정 1실에 한함)	—	50%	20%	
3. 장애인	—	50%		
4. 국가보훈대상자	—	50%		
5. 병역명문가 예우대상 자	—	50%		
6. 기타	—	50%		